

# kt 기업지배구조현장

# kt 기업지배구조헌장

제 정 : 2007.03.29.

개 정 : 2009.03.27.

개 정 : 2010.03.12.

개 정 : 2011.03.11.

개 정 : 2012.03.16.

개 정 : 2016.01.28.

개 정 : 2018.05.03.

개 정 : 2020.03.30.

개 정 : 2023.07.03.

개 정 : 2024.04.11.

개 정 : 2025.03.31.

KT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.)는 국민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사회구성원의 꿈을 실현함으로써, 기업의 사회적 자산을 높이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.

KT 기업지배구조헌장은 주주의 가치제고, 주주총회 및 독립된 이사회와 전문경영인 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, 회사의 투명한 경영이 정착될 수 있는 전문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등, 회사 경영의 근간이 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나아갈 방향을 선언하고 실행한다.

## 1. 주 주

### 1.1 주주의 권리

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회사 이익분배 참여권, 주주총회의 참석권 및 의결권,

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및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
②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인 정관의 변경, 합병·영업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, 해산, 자본의 감소 등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.

③ 주주는 주주총회 참석 전에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으며,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다.

## 1.2 주주의 공평한 대우

① 회사는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한다.

② 주주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,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수주주권의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.

③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.

④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,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.

## 1.3 주주의 책임

① 주주는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회사의 주요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,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.

## 2. 이 사 회

### 2.1 이사회의 기능

-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핵심경영목표와 기본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,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한다.
- ②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소집, 예산의 승인, 해산, 영업양도,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, 신주의 발행, 자본감소 및 주식의 소각, 정관의 변경, 주식배당 결정, 대표이사의 임기내 경영계획, 기타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한다.

### 2.2 이사회의 구성

- ① 이사회는 10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며,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의 수는 2인 이하로 하고, 사외이사의 수는 8인 이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회사의 투명한 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, 평가및보상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### 2.3 이사회의 운영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운영되며,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.
-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감독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, 의안에

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
④ 이사회의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으며 그 운영방법은 아래와 같다.

1. 법령상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의결할 수 있다.
2.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·위원의 선임과 임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## 2.4 이사의 자격

① 이사는 건전한 윤리의식과 직업관을 가져야 하며, 회사와 전체주주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이익을 대표하여야 한다.

②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대표이사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최고 경영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며, 합리적인 판단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.

④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,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균형 있게 선임되어야 한다.

⑤ 정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,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.

⑥ 상법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KT를 포함한 회사의 이사, 집행임원, 감사의 겸직의 수를 최대 2개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.

⑦ 이사는 성별, 연령, 국적, 인종, 종교, 교육 수준,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.

## 2.5 이사의 선임

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한다.

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는 회사의 경영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을 얻어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③ 사외이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④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,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회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 구조, 규모 및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이사회 다양성과 직무 균형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. 이를 위해 회사는 이사 선임 시 이사회 다양성(BoD diversity)과 직무적 상보성(the complementarity of skills)을 확보하여 사업 결정 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적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회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, 성별, 연령, 국적, 인종 등 다양성 지표를 토대로 이사회 다양성을 증진한다. 또한, 회사는 지속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향상함으로써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.

⑦ 회사는 올바르고 시의 적절한 사업 결정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, 직무, 경험, 전문지식, 교육배경 등 직무 지표를 토대로 이사회 직무적 상보성을 확보한다. 또한, 글로벌 혁신 기술 기업으로서의 업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통신 및 ICT 업종 직무 경험을 보유한 이사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.

## 2.6 이사의 의무와 책임

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회에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

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.

② 이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KT 윤리경영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또한, 윤리적 감독인으로서 특정인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며,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③ 이사는 회사와 이사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직하여야 한다. 또한, 이사 개인에 대하여 직간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토론이나 결정과정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.

④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, 이사에겐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.

⑤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하고, 유능한 인사의 유치를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.

⑥ 회사는 이사의 경영참여 촉진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에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## 2.7 사외이사의 역할

①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고,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, 지원한다.

② 사외이사는 회의 안건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를 하고, 핵심이슈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을 한다.

③ 사외이사는 경영진에게 도덕적이고 현실성 있는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충실히 활동하며,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진 보상을

연계시키는데 창조적으로 노력한다.

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,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.

⑤ 회사는 사외이사의 경영참여 촉진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## 2.8 평가 및 보상

① 이사회 내 평가및보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립한 평가기준과 경영목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의 활동내용을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, 회사는 평가에 상응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설계, 운영한다.

② 이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와 사외이사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, 차기년도 이사회 운영개선 계획에 반영한다.

## 2.9 이사의 교육

① 회사는 사외이사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, 회사 경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. 또한, 회사의 장기비전 달성과 주요전략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회의를 정기적으로 갖는다.

② 회사는 이사가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들의 교육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제공한다.



## 3. 감사기구

### 3.1 감사위원회

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경영진 및 특정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며, 경제·경영, 재무·회계, 법률 또는 유관 산업 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고, 상법, 기타 관련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.

③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 내 감사부서를 활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회사에 감사위원회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, 운영,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### 3.2 외부감사인

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정 및 변경·해임하며, 감사위원회는 외부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,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.

## 4. 이해관계자

- ① 회사는 직원, 고객, 협력사,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성실한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.
-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,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의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유지, 개선에 노력한다.
-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, 이해관계자의 관련정보 접근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.

## 5. 공 시

-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,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,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.
-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범위나 공개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,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.